

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검 토 보 고

1. 제 안 경 위

- 발 의 자 : 문성호 의원
- 의안번호 : 제2401호
- 발의일자 : 2025년 2월 3일
- 회부일자 : 2025년 2월 6일

2. 제 안 이 유

- 도시에 사는 청소년들이 자연 생태계에 대한 체험을 하고 환경보호에 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함이며, 직접 여러 가지 국내 식물들을 보고 알아가며 환경을 보호해야 하는 이유를 알도록 유도하기 위함
- 특히 일반적인 서울시민 뿐만 아니라 이를 방문하는 모든 청소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를 통한 접근 가능성 향상을 명시하고자 함

3. 주 요 내 용

- 가. 제8조(시민 여가·문화활동 활성화)를 여가·문화활동 및 환경생태계 교육 활성화로 개정하고 이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며 홍보방안에 대해서도 근거함으로 개정

4. 참 고 사 항

- 가. 관계법령 : 「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」 등
- 나. 예산조치 : 비용추계서(비대상사유서) 참조
- 다. 기 타 : 신·구조문 대비표 참조

5. 검토 의견

가. 개요

-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청소년들이 자연생태계를 체험하고 환경보호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환경생태 교육을 활성화하고 관련 사항을 홍보하도록 하는 것임.

나. 검토의견

- 상위법인 「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」에서는 ‘공원녹지’를 쾌적한 도시 환경을 조성하고 시민의 휴식과 정서 함양에 이바지하는 공간 또는 시설로 정의하고 있으며, 동 조례 제8조에서는 시민 여가·문화 활성화를 위해 계절별 공원의 특성을 살린 다양한 공원이용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.
- 정원도시국은 환경·생태 측면의 교육을 포함하여 폭넓게 공원이용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므로 안 제8조에서 시민 여가·문화활동 활성화를 위해 운영하는 다양한 공원이용 프로그램에 환경생태(계) 교육을 포함하고,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기후변화, 환경오염 등 생태계 위기 시대에 직면한 현 상황에서 ‘공원·녹지·정원’이 가진 본질적인 가치의 환기 측면에서 적절하다 판단됨.
- 그 밖에 공원 이용방법의 다양화 조치 및 홍보에 대해서도 이견 없음.